

#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문

인천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과 서민·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 등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상반기 인상분에 대해 감면됨을 알려 드립니다.

## 1. 감면개요

- 감면대상 :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(수용가)
- 적용업종 : 가정용, 업무용, 영업용, 옥탕용, 산업용
- 감면기간 : 6개월 (2월~7월) 사용분 (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적용  
 ※ 2월에 검침분하여 3월 고지분부터 감면적용 실시
- 감면내용 : 2023년도 평균10% 인상분 감면

《업종별 월 사용량에 따른 감면내역》

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율표			
사용구간 (㎡/월)	사 용 료 (원/㎡)		
	2023년 부과분	2023년 감면금액	할인금액
1~10	410	380	30
11~20	670	610	60
21이상	1,030	940	90
1~50	580	530	50
51~100	610	560	50
101~300	1,260	1,150	110
301~500	1,330	1,210	120
501~1000	1,360	1,240	120
1001이상	1,390	1,270	120
1~50	1,000	910	90
51~100	1,030	940	90
101~300	2,070	1,890	180
301~500	2,170	1,980	190
501~1000	2,230	2,030	200
1001이상	2,290	2,090	200
1~1000	470	450	20
1001~3000	780	750	30
3001이상	1,180	1,130	50
1㎡ 당	770	700	70

☎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: 인천시청 미주홀콜센터 ☎ (032-120) 하수과 032-440-3610